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-120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월 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추가(제2조제11호)

-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30%이하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

나. 저소득주민 지원대상범위 확대(제3조제1항제10호)

-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신설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참조: 복지정책과장, 전화: 450-7418, FAX: 411-1731, E-mail: sjkhappy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 대표자)